

#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사용안

( 의안번호 제515호 )

## 심사보고서

1998. 11. 27.

총무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1. 19   고성군수
- 나. 회부일자 : 1998. 11. 19
- 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8. 11. 26   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### 2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함.

### 3. 주요골자

- 사업명 :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
- 사업내용
  - 위치 : 고성읍 송학리 1-1번지 외 59필지
  - 면적 : 36,193㎡ (10,948평)
  - 시설용량 : 10,500톤/일 (1단계)
- 사업기간 : 1998년 7월 ~ 2001년 1월 (30개월)
- 소요사업비 : 20,973백만원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하수, 축산폐수, 분뇨 등 종합처리 시설하므로써 쾌적한 환경과 수질오염 예방을 기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를 변경하므로 인하여

-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에 의거 고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 20,973백만원을 2001년까지 계속비 사업계획으로 추진 하기 위한 것으로
- 군비부담에 따른 예산확보 추이, 사업추진 상황에 따른 감독·감리상황, 시설결정 등 각종 인·허가, 민원사항 등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될 것이라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당해예산 2,860백만원 확보상황, 사업참여 업체수는
- 답 : 당해예산은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으며, 참여업체수는 현대산업개발 외 4개업체 이며, 지역업체 대창, 대홍 지분율은 가 15%임.
- 문 : 군비부담 및 각종 인·허가 민원사항은
- 답 : 어려운 재정이지만 가용자원 중 군비부담은 불가피하며, 농림부장관의 협의 지연으로 실시계획 인가, 도시계획 결정이 다소 지연되었음.
- 문 : 회화, 마암, 구만면 지구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획과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후 운영방안은
- 답 : 회화, 마암, 구만면 지구에는 설치할 계획은 없으며, 향후 운영방안은 하수도 조례를 제정하여 하수도세 부과 등으로 운영할 계획임.

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1998. 11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